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조세, 투자, 노동에 관한 뉴스 업데이트

2016年02月02日



목차

목차

조세분야

1. 2015법인세 결재신고서를 제출할때 재정보고삽입필수의 조치.
2. 베트남 임직원의 자식들에게 학비 및 공과금.
3. 회계장 바꿈과 외국인을 회계장으로 취임.
4. 국민등록증, 신분증등의 바꿈.
5. Loans 이차 영수증의 발급.
6. 2015년 법인세 결재.
7. 세금의무를 미 완료한 경우의 대상에 대한 출국 임시중지 및 아직 출국되지 못한건의 정부 결정서의 초안.

3-6

투자 분야

1.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시행안내와 구체적 규정에 대한 No.118/2015/NĐ-CP 정부의령.
2. 외국 투자에대한 Logistic서비스 시장 개방의 단계적 계획.
3. 중고 기계, 설비 공업 Lines의 수입.

7-9

노동 분야

1. 계절 작업 및 주문 가공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무, 휴식시간.
2. 2016병신년 구정휴무일동안 에 연근작업의 봉급계산에 대한 주의점.

10-11

우리 Grant Thornton의 전문가들과 같이 연락.

12

2015법인세(PIT) 결재신고서를 제출할 때 재정보고서삽입의 필수 조치.

국세청은 2015/12/08일에 문서 No. 5236/TCT-KK의 발금으로 각지방 세무서를 다음 처럼 안내해준다:

- 재정보고서를 꼭 감사를 받아야한 납세대상자인 경우에 세국에 PIT결제 서류를 제출할때 재정보고서 있지만 감사 보고서 삽입이 없으면 **세무서는 서류접수를 하지않는 동시에 유권 기관을 통보해서 검사 진행 및 회계, 독립 감사 분야의 행정위반 과 법규 패널티 조치를 확인서작성을 한다.**
- 규정처럼 세무서류제출기한을 지난 경우에 납세자가 세금 계산 서류를 제출하면 규정시간 보다 지연 세무서류납부 행위에 대한 재무부의 문서 No. 166/2013/TT-BTC 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한다.
- 세무서는 회계, 독립감사법규정에 대한 재정보고서의 필수 감사를 받은 대상을 정하는 책임져서 납세자를 시간 맞게 중분서류의 제출을 독촉해준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각 기업들이 제시간내 감사 보고서제출을 권고하고 싶다.

베트남직원의 자식들에게 학비와 공과금지급:

국세청은 2015/12/18일의 문서 No. 5452/TCT-CS 를 발급해서 베트남 직원의 자식들에대한 학비와 공과금을 직접 지급해 주고 그런 지급항목들을 기업의 사규에 반영되면서 규정처럼 영수증과 증빙들이 있으면 그 비용을 복리후생 지급으로 생각 하고 법인세 계산시에 공제된다.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준 복리후생본질의 총지급금은 기업의 세금부담년중 평균 01개월 봉급을 초과하지 않다.

2015/12/29일에 사회보훈노동부의 문서 No. 59/2015/TT-BLĐTBXH의 제3조 30항에 따르면 필수 사회보험가입의 사회보험법의 일부조항 시행안내내용중에 **필수사회보험 가입의 월급은 기타제도및 복리후생항목을 포함하지 않다고 한다.**

회계장 바꿈과 외국인을 회계장자격으로 취임

하노이 세무서의 2015/12/10일에 문서 79037/CT-HTr 의 안내에 의하면 기업등록서류내의 기준이 없는 회계장을 바꾼 일이 있는 경우에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단일창구 부세에 양식 No.08-MST를 제출한다.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베트남의 FDI회사가 외국인을 회계장으로 취임하려면 그 후원자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고 추가적 주의를 한다:

1. 회계전문가 증인 아니면 베트남 재부부의 인정을 받은 회계, 감사증인, 혹은 베트남 재무부의 발급된 회계, 감사 사업 증; 혹은 재무부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 교육인증등을 보유해야 한다;
2. 회계업무를 실제적 최소2년동안 근무하고 그중 1년내 베트남에 회계업무를 한다;
3. 회계법의 51조에 규정된 회계업무를 하지 못한 대상자가 아니고 베트남에 1년이상 거주가능하다.

국민등록증, 신분증의 바꿈

하노이 세무서의 2015/10/09일에 문서 66129/CT-HTr 의 안내에 의하면 납세의 개인, 세법 집행에 관련된 개인의 경우에 국민등록증의 변경이 있을때 문서 No.156/2013/ TT-BTC와 같이 발급된 양식 No.08-MTS 처럼 통보를 세무서에 통보해준다. 위반하면 통지서 166/2013/TT-BTC의 6조에 규정된 패널티로 처리된다.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은 기업들이 자기임원에게 통보해서 조세등록정보 업데이트(국민등록증, 신분증)를 제시시간내에 하고 규정 맞게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싶다.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국세청의 2015/10/30일에 문서4503/TCT-DNL의 안내에 의하면 각조직, 개인의 법금지 아닌 Loan을 갚은 차입금의 이자지급은 규정대로 영수증, 증빙들이 있어야 법인세 계산 시에 공제된비용으로 인정된다.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은 기업들이 각종 Loans 을 다시 검토해서 규정처럼 영수증 및 증빙들을 모으라고 권고하고 싶다.

2015년 법인세 결산업무

법인세부담 대상자의 조직이나 개인은 세금 공제의 유무를 구분없이 세금결재와 위임있는 개인에 대한 대신으로 세결재를 책임져준다. 2015년에 소득세 납세 발생이 없으면 개인소득세의 세결재 계산을 하지않다.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2015년에 대한 개인소득세 결산의무를 주의하시라 권고하고 개인소득세 결산신고서 제출과 추가발생 세금의무 (있으면)의 기한은 **2016년 03월 30일**이다.

개인소득세의 스스로 결산의무가 있는 거주개인의 경우에 우리는 다음 주의를 보충한다: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종의 수입: 월급와 수수료(예, 베트남에서 와 외국에서 수입)이 있으면 PIT의 결산서를 작성 해서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Grant Thornton Viet Nam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베트남 세국은 외국세무기관 (예, 한국이나 일본, 등.)과 정보교환으로 외국에서 수익받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소득을 확인 한다. 그에 따라 차이 발생경우가 있어 베트남 세국이 그 개인 들에게 요구해서 설명하나 세의무보충 계산및 각 패널티추가 를 한다.

- 베트남에 근무계약을 종료하는 외국인은 출국하기전에 세무결산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고객님은 2015년 개인소득세결산서의 작성, 검토를 하는데 협조를 받으시려면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의 조세 전문가와 같이 연락해주면 된다.

세금의무를 미 완료한 경우의 대상 에 대한 출국 임시중지및 아직출국 되지 못한건의 정부 결정서의 초안.

재무부는 정부수상에 문서를 제출해서 세금의무(기업인경우에 10억VND이상, 개인이면 5백만 동; 그중에 90일이상의 빛 있는 항목) 완료하지못한 베트남 국민이 아직 출국못하고 외국인이 출국 임시 지연의 조치를 잡다. 대상자들이 다음 :

- 세금의무 미완료된 서비스,물건 생산 영업하는 각조직들의 법적 대표인;** 즉 다음 포함: 성원협회 주식, BOM Chairman, 개인회사 사장, 혹은 세의무 미완조직의 법적 대표인으로 법인 설립규정내의 정관으로 규정된 개인의 경우임.
- 세금의무 미완료의 기타 개인.

외국인의 임시 출국지연 시간은 지연 문서발급날부터 3년 불과 이고 납세의무 완료될때 까지연기된다.

현재, 그런 결정은 얼제까지 정식 발급한지 구체적 정보가 없고 그러나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법대표인과 외국개인 들이 세금의무를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각종의 세금채권을 충분 납입하고 동시에 잠재적 세의무를 골트롤해서 리스크를 감소해준다고 권고하고 싶다.

투자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구체규정과 안내을 위한 정부의 2015/11/12일 의령 No. 118/2015/NĐ-CP 발표:

주의 필요 점들은 다음:

1.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의 바뀜:

- 기업은 투자허가서, 투자증인서, 투자법의 발효하기전에 발급 된 투자증인서 혹은 동등법적효력 있는서류가 있으면 기업활동을 **기업 등록 증인서**로 옮겨된다.
- **기업 등록 증인서**로 발급받은 기업은 투자허가서, 투자증인서, 기업 등록증인서에 규정된 기업의 전부권한 과 의무를 계승 한다.
- 투자법의 발효하기전에 발급 된 투자허가서로 활동하는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실은 기업법에 규정된 지점, 대표사무 실의 활동등록 증인서대로 옮겨활동한다.지점, 대표사무실의활동 등록 증인서의 바뀐 서류, 절차는 본 의령에 상응된 규정처럼 진행한다.
- 기업은 기업등록정보의 어데이트, 보충을 책임지고 투자허가 서, 투자증인서(동시에 영업등록허가서임)의 바뀜진행 혹은 기업해체진행, 영업임시중지,도장 샘플통보; 대표사무시의 활동중지를 할때에 기업등록 증인서 꼭 바뀌주어야한 필요 가 없다.

고객님은 투자증인서, 기업 등록증인서의 바뀜 혹은 기업의자금, 업종변동을 하려는데 지원을 받으시려면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의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주면 좋다.

2. 집행 효력.

본 의령은 2015/12/27일 부터 효력 있고 정부의 2006/ 09/22일에 의령 No. 108/2006/NĐ-CP 를 대신 해준다.

3. 본 의령은 다음 내용 삭제:

- 법인세법시행 안내에 대한 구체적 규정하는 정부의 2013/12/26일에 의령No.218/2013/NĐ-CP의법인세우대 지역 리스트;
- 수입수출세법시행 안내에 대한 구체적 규정하는 정부 의 2010/08/13일에 의령 No.87/2010/NĐ-CP와 삼입 발 급된 수입세우대받은 분야의 리스트;
- 19조4항과 땅 및 수면임대료의 수금규정을 하는 정부 의 2014/05/15일에 의령 No. 46/2014/NĐ-CP 의 “구체화된 행정토지경계선이 있는 지역 에 적용된 땅임대료 우대수혜 지역의 리스트 ”을 규정하는 19조 3항.

외국투자자에게 Logistic 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오픈

Grant Thornton Viet Nam은 상공부의 외국투자 자에게 Logistic 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오픈에 대한 다음 요약한다:

1. 창고용 서비스(CPC 742), 운송대리 서비스(CPC 748):

베트남의 WTO가입 7년후에 취소되고 지금까지 외국투자자는 100%FDI기업을 설립해서 그 서비스를 가능하다.

2. 기타 협조 서비스(CPC 749의 일부): 베트남의 WTO가입 7년후에 JVC내 외국투자금비율의 제한을 취소되지만 JVC설립활동의 조건을 아직 지속적 적용한다.

주의: 기타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WTO에베트남의 구체적 서비스 각서표에 규정하는것이 기타 지원서비스의 의령 No.140/ 2007/ NĐ-CP.에 규정되는기타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다르다.

3. 다음 서비스는 외국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제한조건이 있어 JVC설립을해야된다:

- 해상 운송: 여객운송서비스; 내국 운송제외 (CPC 7211);물건운송 서비스; 내국운송제외 (CPC 7212).
- 통관 서비스 (혹은 세관 중개 서비스).
- 내국 수로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서비스 (CPC 7221); 물건운송 서비스 (CPC 7222).
- 철로 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서비스 (CPC 7111); 물건운송 서비스 (CPC 7112).

- 육로 여객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서비스 (CPC 7121 và 7122); 물건운송 서비스 (CPC 7123).
- 기타 서비스(CPC 749서비스의 일부).

운송서비스 분야의 기타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WTO중 베트남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 각서표에 규정된 II부 11목)은 지금 까지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의 외국자는 100% FDI기업설립을 해서 Logistic 규정법규와 적합된 그런 서비스를 진행 한 다.

고객님들은 100% FDI 투자 기업설립을 하나 Logistic 분야에 JVC진행을 하시려면 우리Grant Thornton Viet Nam(주)의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

2016년 07월01일부터 적용된 중고기계,설비, 기술Lines의 수입

과학기술부의 2015/11/13일에 문서 No.23/2015/TT-BKHCN (“문서No.23”)은 2016년 07월01일부터 적용된 중고기계, 설비, 기술Lines의 수입을 규정한다.

1. 각 중고설비들은 다음 기준을 만족되면 수입된다:

- 10년불과의 수명이 있는 설비;
- 국가기술기준 (QCVN) 혹은 베트남의 국가기준 (TCVN) 아니면 G7국들의 안전, Power절감 및 환경보호 기준들과 적합하는 수입설비.

2. 새투자 및 증설투자제한인 경우:

- 투자제안서류중 중고설비리스트가 있는 투자주장을 유권기관의 승인을 받고 투자법에 따른 등록기관의 투자등록인증을 발급되면 상기 규정을 적용되지 않다.
- 그렇지만, 필요경우에 투자주장의 유권기관, 등록기관 들은 투자주장결정과 투자인증을 발급하기전에 리스트에 반영된 중고설비에 대한 과학, 기술 전문기관의 심사의견을 받을수가 있다.

3. 주의:

- 기업은 자기공장에 가동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수리요구 발생시에 부품, 대체부속등을 수입할수 있다.
- 문서 23에도 수리요구 발생시에 부품, 대체부속등을 수입하는 규정을 한다.

4. 집행 효력:

- 본 문서는 2016/07/01부터 발효한다.
- 과학기술부의 2014/07/15일 문서No. 20/2014/TT-BKHCN 와 중고기계, 설비, 기술lines의 임시수입 중지의 2012/09/06일에 과학기술부의 통보 No.2527/TB-BKHCN들을 삭제한다.

계절근무와 2016년 02월 10일부터 주문 가공작업을 하는노동자에 대한 근무 및 휴식시간.

2015/12/16일에 사회보훈노동부의 문서 No. 54/2015/TT-BLĐTBXH 에 의하면 계절작업과 주문 가공작업을 하는노동자에 대한 근무 및 휴식시간을 반영한다.

1. 적용 대상자:

12개월 부터 36개월로 정하고 업무기한을 정하지 않는계약에 따른 노동계약체결로 일하는 노동자인 경우 :

- 농,림,어업에 계절성질의 생산은 당장 수확하나 수확직후 오래둘수없고 당장 가공한다;
- Buyer의 납품요구시간에 관련된 주문 상품가공, 방적, 봉제, 피혁,신발, 전자부품조립분야등 포함한다.

2. 기준작업 시간 사용의 일부 원칙:

-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의 수수료지급을 해주지 않아한다: 매일 근무기준시간숫가 8시간이하 혹은 특별적 힘든로동, 유해, 위험의 작업을 6시간이하 적게근무한다. 단, 본 문서의 안내에 따른 계획작성을 했다면 된다.
-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의 수수료지급을 해주어야한다: 매일 근무를 계획로 작성된 기준 시간 숫가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에게 업무 배치를 해주지 않다.
- 매일 근무 기준 시간숫가 계획으로 잡은 8시간이상 혹은 특별적 힘든로동, 유해, 위험의 작업을 6시간보다 많으면 그런 차이난 시간을 연근근무시간으로 계산 하지 않다.
- 매일 실제근무 기준시간숫가 계획으로 잡은 기준시간을 초과 하면 그런시간을 연근근무시간으로 계산되고 년중 연근근무 기간과 합한다. 동시에 고용자는 연근시간수수를 지급해야 하고 노동법규처럼 근로자에게 각 제도를 해결해준다.

- 육로 여객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서비스 (CPC 7121 và 7122); 물건운송 서비스 (CPC 7123).
- 기타 서비스(CPC 749서비스의 일부).
- 운송서비스 분야의 기타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WTO중 베트남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 각서표에 규정된 II부 11목)은 지금 까지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의 외국자는 100% FDI기업설립을 해서 Logistic 규정법규와 적합된 그런 서비스를 진행 한 다.

3. 노동 고용자는 무엇을 해야할까?

- 본 문서에 삽입된 부록 1 의 양식처럼 매년 그무, 휴식 시간 계획을 작성하고 조정한다. 계획을 작성하고 조정할때 노조의 의견을 참고로 해야한다.
- 계획작성과 근무시간, 휴식시간변경계획을 사내에 통보해서 집행하기 30일 전에 근로자 알수있게 하고 법규대로 근로자와 같이 연근근무에 대한 합의를 한다.
- 근로자와 같이 계절근무 수수료지급 혹은 년내 동등월별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한다.
- 노동안전, 위생관련 보고서중에 본 문서의집행결과를 지방 사회보훈노동 기관에 매년에 정기적 보고를 보낸다.

4. 집행효력

- 본 문서는 2016/02/10부터 발효한다.
- 2011/11/18일의 문서No.33/2011/TT-BLĐTBXH를 대신한다.

2016년 병신구정날에 연근근무 시간의 월급 계산방법에 대한 주의점

Grant Thornton Viet Nam(주)는 각 기업들이 2016 구정날에 연근 근무시간의 월급계산을 다음 주의를 한것을 권고한다:

시간당 수수료를 받은 노동자에게 연근시간 수수료를 노동법의 104조규정처럼 받게되고 연근시간 수수료의 계산은 다음:

$$\boxed{\text{연근시간 수수료}} = \boxed{\text{정상일에 실지급의 시간당 수수료}} \times \boxed{\text{최소기준 150\% 혹은 200\% 혹은 300\%}} \times \boxed{\text{연근 시간 숫자}}$$

- 정상일 실지급 시간당 수수료 보다 최소 150%기준이고 보통일에 적용한다;
- 정상일 실지급 시간당 수수료 보다 최소 200%기준이고 매주의 휴무일의 연근근무에 적용한다;
- 정상일 실지급 시간당 수수료 보다 최소 200%기준이고 유급휴무날, 명절날, 구정휴무의 연근근무에 적용되고 단, **일당 수수료 받은 자에 대한 노동법규처럼 유급휴무날, 명절날, 구정휴무의 일당 수수료를 제외한것이다.**
- 밤근무자는 정상근무일의 수수료기준에대한 30% 추가로 받게된다.

일당 수수료를 받은 노동자는 일당 계산된 노동계약서에 반영한 사람이고 노동 법규처럼 유급휴무날, 명절날, 구정휴무날의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다.

그럼으로,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2016년 병신구정날에 연근근무요구를 할때 시간당 연근수수료를 다음같이 지급 :

- 만약, 정상일 업무종류에 따른 근무의 월급기준이 A라고 하면:
- 월별 월급을 받은 자는 밤근무, 명절, 구정, 유급휴무날의 연근 수수료를 최소로 다음:

$$300\%A + 30\% A + 20\% \times (300\%A) = 39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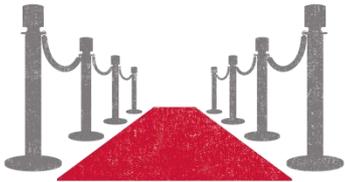
- 일당 수수료를 받은 노동자인 경우에 최소 390%A의 봉급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명절, 구정, 유급휴무날의 연근 수수료를 규정처럼 받게된다 (**즉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490%A로 받는다.**).

연락처

본 소식통의 정보들은 효력이있는 법규와 각종 문서부터 요약하거나 종합한다. 우리GT Vietnam(주)의능과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 내용들이 관련된 고객님들에게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생각한다. (주) Grant Thornton Viet Nam은 본 소식통 의 잘못된점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 손해를 입은데 책임 지지 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시거나Grant Thornton Vietnam의 협조를 받으시 려면 저희들의 전문가 들하고 연락 및 합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 상기의 소식통내용등 download 를 하시려면 다음 Web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www.grantthornton.com.vn



Văn phòng Hà Nội- 사무실

Tầng 18, Tòa tháp Quốc tế Hòa Bình
106 Hoàng Quốc Việt
Quận Cầu Giấy, Hà Nội
Việt Nam
Đ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àng Khôi

Partner Tư vấn thuế
ĐT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ễn Đình Du

Partner Tư vấn thuế
ĐT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ạm Vinh

Hàn quốc고객 님 지원
M. +84 0913 02 4204
E. 50vinhphamngoc@gmail.com

Kaoru Okata

Giám đốc - Khách hàng Nhật Bản
ĐT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ạm Ngọc Long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Văn phò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사무실

Tầng 14, Tòa nhà Pearl Plaza
561A Điện Biên Phủ
Quận Bình Thạnh, Tp. Hồ Chí Minh
Việt Nam
ĐT + 84 8 3910 9100
F + 84 8 3910 9101

Nguyễn Hùng Du

Partner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ần Hồng Mỹ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Giám đốc - Khách hàng Nhật Bản
ĐT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ần Nguyễn Mộng Vân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Questions & feedback

